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5. 12 선고 2023가단1028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4.

판 결 선 고 2023. 5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,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. 5. 6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. 5. 24. 접수 제23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부친 D가 사망하자 2018. 5. 24. 자신에게 상속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/13 지분에 관하여 2018. 5. 6.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‘이 사건 협의분할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2017년경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. 2. 5.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27444, 이하 ‘종전 소송’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22. 7. 27. F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,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‘F’라 한다)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,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3. 1. 30.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관련법리

1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(민법 제406조 제2항),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,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(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1700 판결 등 참조).

2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

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).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,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).

나.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

원고가 2019년경 이 법원에 이 사건 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. 2. 5.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2020. 2. 5.에는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.

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의 양수인이 선의이더라도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.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양도인의 악의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결정되는 것과의 균형을 생각하면,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수인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이 사건 소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인 2020. 2. 5.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3. 1. 30.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윤규

별지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광역시 남구 H
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남구 I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2층 J호

블록조 54.98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)

부산광역시 남구 H 대 288.2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2,882분의 480. 끝.

